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4. 참고사항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도 총무과-3559(2004.5.25)】

5. 검토의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의 확대실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조정, 근무시간 변경, 비밀엄수의무 강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